

■ 법률 칼럼

미군 현역 또는 예비역들의 밀입국 가족 구제(Place in Parole)

이민이나 세관(Immigration and custom)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한 경우 현행 이민법 아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601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 받은 다음 한국에 나가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하거나 또는 복무 중인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을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Parole의 의미는 “미국에 들어온을 허가해 주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Legal Entry)을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 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undoc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으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밀입국한 사람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



자/자녀의 이민 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 주면 미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즉 가상적으로 현재 직계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경보호처로 그 직계가족이 입국(Parole)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밀입국자분들 중에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로 많은 분들이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밀입국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신분들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

■ 장례 칼럼

Henry 장례 준비서 6. 장례보험 및 유골 처리 방법

■ 장례보험

장례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미국에 장례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여럿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믿을 수 있다. 장례보험의 장점은 참으로 많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장의사를 통하여 장례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면 20년 30년 후에 장례를 치를 때 인상된 가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도 남은 유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장례를 잘 마칠 수 있기에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다. 자녀들에게 교육적이다. 본인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 예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언 중에 인생을 가르치는 산 교육이다.

장례보험은 계약 할 때 한 장의사를 선정하여 그 장의사의 가격을 기초하여 작성하지만 언제든지 장의사는 바꿀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의사의 가격과 서비스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장의사로 옮길 수가 있다. 또 20년 전 매장으로 준비를 하고 완납하였으나 지금 간소한 화장을 원하면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A라는 큰 장례업체에서 장례보험을 구입하였지만 B라는 장의사에서 같은 장례를 저렴하게 한다면 B 장의사에서 예식을 치르고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현재(2023년), 장례예식보험을 2만불 까지 준비하여도 국세청에서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만약 생명보험을 2만불 가지고 있으면 재산으로 간주하여 시니어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 유골 처리 방법

1. 공원묘지에 매장을 하든지 납골당에 모신다.
2. 공원묘지에 유골들을 공동으로 뿐리는 장소가 있다. 벽에 이름만 새긴다.
3. 바다에 뿐리려면 어느 카운티 인접 바다에 나가 유골을 뿐릴 것이라고 사

망증명서에 작성해야 한다. 유골을 받으면 주정부에 등록된 배를 선정하여 적어도 3해라는 나가 유골 가루를 뿐릴 수 있다. 만약 유골함 채로 던지기를 원하면 유골함이 4시간 이내에 녹아 없어지는 수용성어야 한다.

4.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유골 가루를 뿐리려면 허가를 받은 비행사와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

5. 주립공원 혹은 국립공원에는 한적한 곳에 조용히 뿐릴 수 있다. 망자가 즐겨 찾던 공원의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 유골은 유해한 물질이 아니기에 주위 사람의 이목을 피하여 조용히 뿐려도 무방하다.

6. 유골을 집에 모시고 있을 수 있다.

한편 유대인들은 성경말씀에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영혼이 떠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하라는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가능한 빨리 장례를 진행 시킨다. 그들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지상에 오래 불들고 있는 것은 불경하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1. 그들은 시신 방부 처리(Embalming)를 하지 않는다.

2. 가능한 다음날 하관 하기를 원하다.

3. 그들은 나무관을 사용하며 뜻과 같은 쇠를 사용하지 않고 아교와 풀 등 접착제를 사용한 관만 사용한다. 여하의 쇠는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긴다.

4. 겉관(Vault)은 밀바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5. 공원묘지에 유대인 구역이 따로 있음을 종종 보게된다.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632

